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3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조계원·김문수·주철현

김우영 • 양문석 • 양부남

이기헌 • 민병덕 • 임오경

박지원 • 윤준병 • 이개호

소병훈 · 신정훈 · 민형배

이강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사진·만화·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온전히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을 "인쇄매체,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5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			
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			
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u>컴</u>	<u>থ</u>		
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쇄매체, 컴퓨터나 그 밖의 통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신매체를 통한 그림·사진·		
된 것을 말한다.	<u>만화·화보·영상</u>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